■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[별지 제9호서식] <개정 2018. 1. 12.>

[ ] 휴업
교통안전진단기관의 [ ] 폐업 신고서
[ ] 재개업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30일

신청자	상 호		
	대표자		생년월일
	사무소 소재지		전화번호
등록분야		등록번호 (등록일)	( )

신고내용	휴업 예정 기간	. . . ~ . . .(년 월)
	재 개 업 일	. . .
	폐 업 일	. . .
	휴업 · 폐업 사유	

「교통안전법」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
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1. 휴업 · 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. 등록증원본(폐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 음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→	접 수	→	서면 심사	→	기안 및 결재	→	통 보
신고인		처리기관		처리기관		처리기관		처리기관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